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4년도 1/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4.03.27.)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직원 복지를 위한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정부장려금을 활용하여 2024년부터 ‘함께해요 우리가족’ 은 1인 10만원을, ‘자율체험(프리데이)’ 는 1인 5만원을 정부장려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예산 부족 시 지원금액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함)
2. 제1호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함께해요 우리가족’ 은 근로시간 內 참여하는 경우 2일에 한하여, ‘자율체험(프리데이)’ 는 1일에 한하여 출장명령서를 사전에 득한 후 실시한다.
(단, ‘함께해요 우리가족’ 은 2일 연속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단위로 분리하여 시행 가능하며, 본 건 관련 노사합의일 이전에 既 사용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1일을 추가로 사용 가능함)
3. 제1호 및 제2호의 합의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재직자로서, 임원, 정규직, 전문계약직, 근속연수 1년 이상 기간제(전일제), 정부장려금 지원 사업 수급 대상자로 한다.
(단, 지원대상 범위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함)

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

2024. 3. 27.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박만호

박만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원명희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4년도 2/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4.06.24.)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이 업무 유관 학위(야간 대학 학위(학사, 전문학사) 과정, 야간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및 자격증 취득 과정에 참여할 시 출장 시간을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단, 출장 상선에 따른 출장여비(식비, 일비 등)는 지원하지 않는다.

구분	월(한도)	1일(한도)
시간	16시간	2시간

※ 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시 소속 부서장 판단하에 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2012년 4분기 노사합의(2012. 12. 10.) 내용 중 아래 내용은 폐지하기로 합의한다.
 - 1) (근무평정)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는 동일기간 동일직급 평가등급 ‘우’ 등급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다.
 - 2) (경영성과급) 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가~나’ 등급을 받는 경우,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수’ 또는 ‘우’ 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다.
3.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무평정(다면평가) 및 평가급 지급률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

2024. 6. 24.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창

이수창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원명희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4년도 3/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4.09.26.)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직원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취업규정 제32조 제1항의 특별유급휴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단, 부천시의 승인을 얻고 부천도시공사 취업규정을 개정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u>1일</u> 7. 여성 직원이 임신한 때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실시기준을 따른다. 9. <u>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u>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0.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u> 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7.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9.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36개월 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0.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자녀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2. 보수규정에 수소가스안전관리자 수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천시의 승인 및 부천도시공사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 관련 수당 없음	○ 수소가스안전관리자 월 30,000원



3. 공사는 합리적인 보상휴가 사용을 위해 단체협약 제26조의4(보상휴가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안)
<p>단체협약 제26조의4(보상휴가제) 공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를 전제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같음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u>보상휴가 사용은 발생 월을 제외한 3개월 이내로 한다.</u> (이하 생략)</p>	<p>단체협약 제26조의4(보상휴가제) 공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를 전제로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같음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u>보상휴가 사용은 발생 월을 제외한 6개월 이내로 한다.</u> (이하 생략)</p>

본 합의는 문서로 2부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날인한 후 공사와 노동조합 1부씩 보관한다.

2024. 9. 26.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창

이수창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원명희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4년도 4/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4.12.27.)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직원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연차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단, 부천시의 승인을 얻고 부천도시공사 취업규정 제28조(연차유급휴가)을 개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가. 연차저축제도 시행(안)

구 분	내 용	비 고
연간 최대 저축가능일수	10일	연차 보상 최대일 (10일)과 동일한 일수
저축연차 유효기간	3년 (근로기준법 임금시효 고려)	2024년도 발생 연차를 저축할 경우, 2027년 12월 31일자로 소멸
저축연차 보상여부	보상 x	-

나. 취업규정 제28조(연차유급휴가)

현 행	개 정(안)
제28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⑥ (생략)	제28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 다만, 제10항의 연차 저축 및 공사의----- -----.
⑧ ~ ⑨ (생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⑩ 직원은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최대 10일 까지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저축 연차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저축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2. 공사는 성과 직원에 대한 보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변경하여 실시한다. 단, 부천시의 승인을 얻고 인사규정 제26조(승진 소요기간)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개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현 행	개 정(안)
제26조(승진소요기간등) ① 일반직 직원의 직 급별 승진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1. 3급에서 2급 : <u>4년</u> 이상 2. 4급에서 3급 : <u>4년</u> 이상 3. 5급에서 4급 : <u>3년</u> 이상 4. 6급에서 5급 : <u>3년</u> 이상 5. 7급에서 6급 : <u>2년</u> 이상 6. 8급에서 7급 : <u>2년</u> 이상 7. 9급에서 8급 : <u>2년</u> 이상	제26조(승진소요기간등) ① ----- ----- 1. 3급에서 2급 : <u>3년</u> 이상 2. 4급에서 3급 : <u>3년</u> 이상 3. 5급에서 4급 : <u>2년</u> 이상 4. 6급에서 5급 : <u>2년</u> 이상 5. 7급에서 6급 : <u>1년</u> 이상 6. 8급에서 7급 : <u>1년</u> 이상 7. 9급에서 8급 : <u>1년</u> 이상

※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한다.

3. 공사는 복지택시 운전원의 근무 환경에 따른 합리적인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해 단체협약 제25조(노동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안)
【단체협약 제25조제3항】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노상주차 관리원 및 노외주차관리원(노외주차관리원은 수입금 전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함)의 입금시간(20분), 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시간 및 각종 행사시간 등을 말한다.	【단체협약 제25조제3항】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노상주차 관리원 및 노외주차관리원(노외주차관리원은 수입금 전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함)의 입금시간(20분), 복지택시 운전원의 복귀 시 간(10분 단위) , 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시간 및 각종 행사시간 등을 말한다

4. 공사는 직원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적극 행정을 위하여 전직원 대상 행정종합배상 공제에 가입한다. 단, 부천시의 승인을 얻고 관련 예산 확보 및 규정 개정을 완료한 경우에 실시한다.

2024. 12. 27.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창

이수창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원명희